

급여제공 계약서



공정거래위원회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2014년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방문요양]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당사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 경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제공자 (을)	시설명	이래노인복지센터	시설종류	재가급여(방문요양)
	대표자 성명	지 석 연 (인)	연락처	010-8802-3810
	주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로 94 (송촌동) 1층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인)	관 계	‘갑’의 ()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이동전화)
	주 소			

제1조 【 목 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 급여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 【 급여이용 및 제공 】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구분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 시간(1)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오전, ☐ 오후 시 분 ~ ☐ 오전, ☐ 오후 시 분
이용 시간(2)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오전, ☐ 오후 시 분 ~ ☐ 오전, ☐ 오후 시 분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비고
이용시간1								※이용시간2는 1일 2회 이용할 경우 기재함
이용시간2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 【 계약자의 의무 】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 (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 【 계약해지 요건 】

- ① ‘갑’ (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 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 (또는 ‘병’)의 동의 없이 ‘을’ 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 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 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 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 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 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 【 계약의 해지 】

- ① ‘갑’ (또는 ‘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 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 과 ‘병’ 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 【 이용료 납부 】

-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계좌입금)으로 (25)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 ④ ‘을’은 ‘갑’ 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 【 재계약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 과 ‘을’ 이 필요한 경우

제10조 【 건강관리 】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 위급 시 조치 】

-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 【 개인정보보호 의무 】

-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 【 기록 및 공개 】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 (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 【 배상책임 】

-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 (또는 ‘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 ‘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 15조(기타)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 (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二五
 二四
 二二

상기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갑’ 과 ‘병’ 에게 제공하였습니다.

‘을’ 대표자 지 석 연 (인)

상기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인)

‘동’ 대리인(보호자) (인)

재가기관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2021년 01월 01일 기준)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인지지원등급
1,520,700	1,351,700	1,295,400	1,189,800	1,021,300	573,900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기초생활수급자		0% 부담	
		의료, 감경 (40%, 60%)		9% 또는 6%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 원거리교통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가산, 주·야간보호 이동서비스비용 및 목욕서비스 제공가산, 급여비용 가산,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는 월 한도액에 포함하지 않음

[첨부 2] 방문요양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 방문요양 1회 210분, 240분 폐지(단, 1등급, 2등급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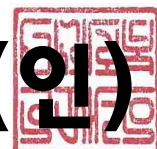
구분	금액(원)							
방문요양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1·2등급만 이용 가능	
							210분 이상	240분 이상
	14,750	22,640	30,370	38,340	43,570	48,170	52,400	56,320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36,530			45,810			55,12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75,450			68,030			42,480	

[첨부 3] 방문목욕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42,480	75,450	68,03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각각 9% 또는 6%를 본인이 부담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은 무료이다.

이래노인복지센터(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본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에 따른 관련법령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메일, 예금 계좌,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에 기재된 기본정보, 장애정보, 가구정보, 서비스 제공이력, 기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 장기요양급여계약에 관련 본인 확인절차 및 만족도 조사에 활용
- ☐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업무에 활용
- ☐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장기요양급여계획을 위한 조사)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 상기 개인정보는 장기요양 사업기간 동안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보유 및 이용됩니다.
- ☐ 장기요양 급여계약 및 이용내역에 관한 정보는 5년간 보유하며 이외의 정보는 계약해지 시 6일 이내 파기한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 시 불이익

- ☐ 상기 내용은 장기요양관련 업무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음. 다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중요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별도 동의

-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할 수도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계약 및 본인 확인절차

※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본 기관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이용을 위한 활용
- 본인부담금 납부·환급 및 만족도조사 업무 수행에 활용

※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고 기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성명 :

(서명)

이래노인복지센터 (인)



수급자 태그정보 이용 동의서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공단은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어르신의 수급권을 보호하고자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어르신과 급여계약을 체결한 재가기관이 동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어르신의 가정에 태그를 부착하고, 요양요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시작하고 종료할 때에 휴대폰으로 태그를 읽으면 태그 번호와 서비스 시작 및 종료 시간과 서비스 내용만 우리 공단에 통보되어 서비스 관리에 이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수급자 성명		생년월일	
--------	--	------	--

수급자(보호자)성명 : (서명 또는 인) [관계 :]

20 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태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및 이용 등 >

① 태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 요양요원의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급여비용의 청구·심사자료로 이용하기 위함

② 태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항목 : 태그 일련번호(국제표준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태그 일련번호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음)

○ 수집방법 : 요양요원이 소지한 휴대폰과 리더기를 통하여 태그정보를 읽어 공단으로 전송

③ 태그정보의 이용 · 보유기간

○ 동의서를 제출한 때부터 수급자 사망 이후 장기요양 급여의 이용을 더는 확인할 필요가 없을 때까지 (다만,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보유)

④ 태그정보의 공유 및 제공

○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원칙적으로 제3자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음

⑤ 태그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 보장

○ 태그 수집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음. 다만,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에 참여하려면 수급자의 태그 일련번호라는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하므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 시스템에 참여할 수 없음

⑥ 개인정보 수집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가급여 전자관리시스템 업무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

- 성 명 :
- 주 소 :
- 계약기간 :
- 이용기간 :
- 급여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20 년 월 장기요양급여 이용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구 분		금액(원)	내 역
총 계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10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0%)		
	비급여 재가급여 월한도액 초과금액		

※ 본 세부내역은 계약서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실제 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 년 월 일

이래노인복지센터장 (인)



급여제공 변경 동의서

● 수급자 기본 정보

수급자성명	(인)	서비스시작일	
변경요양등급		변경인정번호	
변경요호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변경내역	☐ 급여종류 변경 ☐ 계약기간 갱신 ☐ 기타(서비스 제공시간 변경)		

● 서비스 변경 상세 안내

변경 전	급여종류	횟 수(주)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주()회	()분	()원	()원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계약기간				
변경 후	급여종류	횟 수(주)	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주()회	()분	()원	()원
	☐ 방문목욕				
	☐ 주야간보호				
	☐ 계약기간				

● 서비스 변경 사유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서 초기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제공시간에 대해서 위 내용같이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관에서는 위에 설명된 사유에 의해서 수급자에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에 대해서 변경하여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자 (본 인) : (인)

보호자 (대리인) : (인)

이래노인복지센터(인)



급여제공계약 변경 동의서

● 수급자 기본 정보

수급자성명	(인)	서비스시작일	
변경요양등급		변경인정번호	
변경유효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변경내역	202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수가변동에 따른 동의		

● 서비스 변경 상세 안내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구분	장기요양 1등급	장기요양 2등급	장기요양 3등급	장기요양 4등급	장기요양 5등급
2019년(기준)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2020년(변경)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2. 재가장기요양기관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 요양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2019년(기준)	14,120	21,690	29,080	36,720	41,730	46,130	50,190	53,940
	2020년(변경)	14,530	22,310	29,920	37,780	42,930	47,460	51,630	55,490
방문 간호	구분	30분 미만			30~60분 미만			60분 이상	
	2019년(기준)	35,230			44,190			53,170	
	2020년(변경)	36,110			45,290			54,490	
방문 목욕	구분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2019년(기준)	72,540		65,410			40,840		
	2020년(변경)	74,470		67,150			41,930		

● 서비스 변경 사유

2020년 재가장기요양기관 수가변동에 재가기관 월한도액 및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의
변동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본 기관에서는 위에 설명된 사유에 의해서 수급자에 제공되고 있던 서비스에
대해서 변경하여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동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수급자 (본 인) : (인)
보호자 (대리인) : (인)

이래노인복지센터(인)



급여제공에 따른 교육자료 제공 및 부분 수령 확인서

□주요 자료제공

1.급여제공교육 및 업무범위 , 기본내역 주요내용

제공교육 자료명	자료내용	자료제공
감염예방자료	손씻기 할때는 흐르는물 사용, 20초이상꼼꼼히 씻기등	수급자집
응급상황 대응지침	화재예방교육, 응급조치, 인공호흡, 소화기 사용방법 등	수급자집
탈수예방 교육자료	원인모르는 미열,식욕 부진 계속, 목의 갈증을 호소 등	수급자집
배변도움 교육자료	변기넣기, 변기빠기, 관찰(배설물의 색상), 색깔, 냄새, 투명도	수급자집
노인학대예방 자료	언어, 정서적학대, 재정적 학대와 노인복지법 등	수급자집
종사자 윤리지침	자율성존중의 원칙, 무해성의 원칙, 선행의 원칙정의의 원칙	수급자집
성폭력, 성희롱 교육자료	자율성존중의 원칙, 무해성의 원칙, 선행의 원칙정의의 원칙	수급자집
치매예방 교육자료	치매예방자료 및 치매 어르신 관리 및 주의 사항에 대한 자료	수급자집
관절구축 교육자료	고관절과 무릎, 고관절과 발목, 고관절과 뒤꿈치 등	수급자집
낙상예방 교육자료	운동실시, 안전한 환경, 욕실바닥, 미끄럼방지, 부축예방	수급자집
욕창예방 교육자료	압력, 마찰, 영양실조, 배설물, 감각지각 장애	수급자집
업무범위 및 급여제공범위	급여제공범위, 요양보호사 준수사항,업무범위,불가능업무범위	수급자집
급여제공계약서 설명 및 부분제공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서비스 시작전 계약서 2부 작성후 1부 제공받았음	수급자집

2. 수급자(또는 보호자) 확인

수급자 혹은 대리인은 본 서면에 의해, 관리책임자 또는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방문목욕 제공서비스와 관련하여 교육자료를 제공 받고 방문(대면)을 통하여 설명받았으며, 또, 개인정보의 취급에 준하여 교육을 받았음에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제 공 자 : 지 석 연 (인)

수급자 (본 인) : (인)

보호자 (대리인) : (인)

이래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종결(□신청 □안내)서

- 성 명 :
○ 주 소 :
○ 계약기간 :
○ 이용기간 :
○ 급여종류 :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기요양급여(□이용 □제공)을
종결신청(안내) 합니다.

- 아 래 -

1. 종결사유

- ☐ 타기관이용 ☐ 타서비스이용 ☐ 등급변동 ☐ 장기입원 ☐ 사망
☐ 계약기간종료 ☐ 기타()

2. 종결일자 :

20 년 월 일

이래노인복지센터장 (인)

